

■ 법률 칼럼

주재원(L 비자) 및 E 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이미 작년 11월 이민국은 L 과 E 비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없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인 I-9 서류 작성 시에 증거 서류로 노동허가증 대신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2022년 1월31일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입국 시 부여되는 I-94신분 코드를 구체적으로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부여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취업 가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재원(L)이나 E(E-2 포함)비자 배우자들은 노동허가증(EAD)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노동허가증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지연되면서 과거부터 일을 해오시던 직장에서 노동허가증 연장을 받지 못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국은 2022년1월31일 이후부터 E비자 또는 주재원의 배우자(L-2) 또는 E-2 배우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분들에게 새로운 입국 코드를 부여하고 이 분들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E와 L 비자 배우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민국은 미국에서 I-539 양식을 통해서 신분을 받은 분들은 이민국에 직접 통보서를 보내고, 미국에 비자로 입국을 한 분들은 국경보호처를 직접 접촉해서서 입국 코드를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의 참고를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대장암 검진 (colorectal cancer screening)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대장암은 특히 정기검진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장암의 경우 작은 대장용종에서 시작되어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암으로 자라기 때문에 미리 대장내시경으로 발견을 한다면, 암으로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검진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대장암 발병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이면서 또한 세 번째로 암 관련 사망자수가 높은 암입니다.

2021년 5월에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대장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50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을 45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 케이스는 50세 이후에 생기지만, 암 조기 발견의 장점과 조기 검진의 부담을 고려해 보면 45세에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장단점을 생각할 때 균형에 맞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지침입니다.

대장암 검진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FIT (fecal immunochemical test)이라 하여 대변검체를 매년 검사하는 방법, 대변 DNA test를

3년마다 하는 방법, CT 대장조영술 혹은 굴곡 S결장경 검사를 5년마다 하는 방법, 그리고 대장내시경을 10년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 검사나 CT 대장조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후속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대장암 검진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 결정은 환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장암 위험도가 평균인 사람은 보통 75세까지 검진을 계속하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76세에서 85세까지는 주치의와 상의 하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85세가 지나면 대장암 검진의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주치의와의 상의 후 검진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

